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번호	561
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02월 28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김동욱 의원이 2023년 1월 5일에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422)과 이민옥 의원이 2023년 1월 27일에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491)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31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 2. 28)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,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 임기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, 추천기한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으로 위원 추천 지연과 임원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.

- 또한, 현재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시에만 타당성 검토와 검토 결과 공개,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현행 법령에서 포함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고 있으나, 통폐합 추진 시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.
- 이에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기한을 규정하고, 통폐합 시에도 타당성 검토와 결과의 공개, 주민의견 수렴 등 설립 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들을 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 시, 타당성 검토 및 결과의 공개와 검토 결과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등 설립 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들을 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함(안 제5조의2 신설).
-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자는 출자·출연 기관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제6항 신설).
-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특례조항을 규정함(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).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출자·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) ①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2항에 따른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통폐합을 하는 경우 출자·출연 기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내역과 그 사유

2. 통폐합으로 인한 출자·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등의 변동이 시
민생활에 미치는 영향

3.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

4.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

5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
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하여야
한다.

④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·출
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전문기
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 검토
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 각 호의 추천자는 출자·출연 기관으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
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)

- ①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통폐합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출자·출연기관을 통폐합하기로 심의·의결한 경우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등 통폐합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의 특례) 제8조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의2(출자·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)</p> <p>①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2항에 따른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통폐합을 하는 경우 출자·출연 기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내역과 그 사유 2. 통폐합으로 인한 출자·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등의 변동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3.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4.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5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~ ⑤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⑥·⑦ (생략)</p> 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1항 각 호의 추천자는 출자·출연 기관으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⑦·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출자·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) ①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통폐합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/p> <p>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출자·출연기관을 통폐합하기로 심의·의결한 경우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등 통폐합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3조(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의 특례) 제8조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/p>